

#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답변**

**-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2023. 8. 31.

**국 토 교 통 부  
도로투자지원과**

□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답변

[A사]

구 분		질 의	답 변	비 고
연 번	(제3자 제안 공고)			
1	p.8	<p>제1조 용어의 정의</p> <p>(62) 제세공과금 : 본사업에 대하여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 및 공과금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을 말함.</p> <p>· 취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제1항이 연장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본 사업시설에 부과가 예상되는 취득세를 산정하여 총사업비 중 제세공과금 항목에 반영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p>	<p>○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228호)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p>	
2	p.11 ~13	<p>제4조 사업의 범위</p> <p>(2) 사업구간</p> <p>① 본사업은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동부간선 접속)/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수도권제1순환)에서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수도권제2순환)/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국도3호선대체우회도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등을 건설하는 사업임([본사업구간 도면] 참조).</p> <p>* 본선 시점: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동부간선 접속) 본선 종점: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국도3호선대체우회도로)</p> <p>...</p> <p>④ 사업제안자는 사업구간 인근 의정부시 및 양주시에 위치한</p>	<p>○ 본선은 시점부터 종점까지 연속적으로 제 기능을 유지해야 하며, 공고문 제5조 성과요구 수준 (4)도로설계기준 등을 고려해 계획하여야 합니다.</p>	

구 분	질 의	답 변	비 고
연 번 (제3자 제안 공고)			
	<p>북한산 국립공원의 보존가치를 고려하여 공원 저축을 최소화하도록 노선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함.</p> <p>⑤ 사업제안자는 수도권제1순환도로 사패산터널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제안 노선이 긴급수송로 또는 우회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p> <p>· 본 사업이 북한산 국립공원의 저축을 최소화 하고 사패산 터널의 긴급수송로 또는 우회로 기능을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본선과 지선이 접속하는 지점에 한하여 본선과 본선을 연결로(분기점)로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하여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p>		
3	<p>p.13 제4조 사업의 범위</p> <p>(2) 사업구간</p> <p>③ 사업제안자는 ‘광석지구택지개발사업’ 및 ‘복지지구 지구단위 계획’ 등 사업구간 인근의 개발계획을 고려하여 노선의 주요통과구간을 검토하여야 함(사업제안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양주시와 사전협의 후 그 결과에 대한 검토내용 등을 제시할 것).</p> <p>· 해당사업은 실시계획승인 이전단계 사업으로서 적격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지침 등에서의 반영기준에 미달하는데, 본 교통수요 분석에서는</p> <p>① 개발계획을 고려하여 교통망에 반영하고, 교통수요분석에도 유발교통량을 반영해야 하는지</p> <p>② 개발계획을 고려하여 교통망에 반영하고, 교통수요분석에는 유발교통량을 반영하지 않는지</p> <p>해당사업의 교통분석 범위 반영(평가요소 ‘주변개발계획등 검토의 합리성’에 영향)하는 기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p>	<p>○ 해당 내용은 <u>노선의 주요통과구간 검토시</u> ‘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 및 ‘복지지구 지구단위계획’등을 고려 하라는 의미입니다.</p> <p>○ 교통수요 분석은 제3자 제안공고 (제28조, 제35조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개발계획을 포함한 교통수요추정은 사업제안자의 판단과 책임사항입니다.</p>	

구분	질 의	답 변	비 고
연 번  (제3자 제안 공고)			
4	<p>p.14</p> <p>제4조 사업의 범위</p> <p>(4) 추정 건설사업비 및 추정 총사업비</p> <p>② 주무관청이 추정한 보상비는 2,721억원(국공유지 포함)으로 보상비를 포함한 추정 총사업비는 8,607억원(2020년 06월 30일 기준)임.</p> <p>· 주무관청 추정 보상비(2,721억원)는 국유지를 보상비에서 제외하고, 공유지는 보상배율 1.0배를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분석에서는</p> <p>① 위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p> <p>② 「도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국·공유지 중 행정재산(도로, 하천, 철도 등)은 보상비 산정시 제외하고, 일반재산(전, 답, 잡종지 등)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총괄지침(기획재정부, 2022.12)을 적용하여 보상비를 산정하는지 질의 드립니다.</p>	<p>○ 추정보상비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도로·철도부문 연구(KDI, 2022.12) 등을 바탕으로, 국유지 면적은 제외하고 사유지와 공유지 면적에 개별 공시지가와 보상배율을 적용하되, 공유지 면적분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만을 적용하고 보상배율은 배제(1.0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사업제안자는 이를 참고하여 보상비를 산정하시기 바랍니다.</p>	
5	<p>p.19</p> <p>제7조 사업제안자의 자격</p> <p>(2) 사업제안자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p> <p>⑥ 사업제안자가 주무관청에 건설보조금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 제안서의 공정한 비교평가를 위해 자기자본이 전액 투입된 후 건설보조금이 투입되는 것으로 하며, 이 경우 건설보조금은 가격산출기준일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특정연도에 집중되지 아니하고 본사업시설을 준공할 때까지 공정률에 따라 안분되어 투입되는 것으로 계획하여야 함. 다만, 실제 보조금 지급일정은 실시협약으로 정함.</p> <p>· 건설보조금 투입이 개시되는 분기가 자기자본이 전액 투입 완료되는 해당 분기인지, 자기자본이 전액 투입 완료되는 해당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인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p>	<p>○ 건설보조금 투입이 개시되는 분기는 자기자본이 전액 투입 완료되는 해당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입니다.</p>	
6	<p>p.19</p> <p>제7조 사업제안자의 자격</p> <p>(2) 사업제안자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p>	<p>○ 임의 양식으로 제출 가능합니다.</p>	

구 분	질 의	답 변	비 고
연 번 (제3자 제안 공고)			
	<p>⑦ 사업제안자는 본사업에 참여하는 출자자 가운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1인의 출자자를 본사업 사업제안자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함)로 지정하고, 대표자는 사업제안서 제출, 협상, 실시계획 수립을 포함한 본사업과 관련된 전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자의 출자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li> <li>- 전략적투자자를 대표자로 지정할 경우 전략적투자자(운영출자자 제외) 중에 출자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를 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함.</li> <li>- 재무적투자자를 대표자로 지정할 경우 설립예정 또는 설립된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재무적투자자들 중에 출자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를 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투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집합투자기구는 본사업의 대표자가 될 수 없음).</li> <li>- 기 지정된 대표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 사업제안자(우선협상 대상자, 사업시행자 포함)는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li> </ul> <p>· 1단계 평가 사전적격심사(PQ) 서류에 대표자 지정과 관련한 양식을 사업제안자가 임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p>		
7	<p>p.20 제8조 출자자 및 출자지분율</p> <p>(1) 출자자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출자자 전체를 단일출자자로</p>	<p>○ 임의 양식으로 제출 가능합니다.</p>	

구 분	질 의	답 변	비 고
연 번	(제3자 제안 공고)		
	<p>보며, 공동출자자는 그들을 대표하는 1명의 대표출자자를 지정함. 이 경우 대표출자자만이 공동 출자자를 대표하여 경영권을 행사하는 조건이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출자자를 지정이 필요할 경우, 1단계 평가 사전적격심사(PQ) 서류에 대표자 지정과 관련된 양식을 사업제안자가 임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li> </ul>		
8	<p>p.32 제11조 위험의 분담 2. 투자위험의 분담 및 환수 (3) 매년도 투자위험분담기준금 및 환수기준금은 다음 방식으로 산정함.</p> <p><math>r_d</math>: 보전대상 민간투자비 적용 협약 차입금리 (= <math>r_f</math> + 위험보상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기 위험보상율은 최초제안자가 최초제안시 제시한 선순위 금리 '국고채(5년) + <math>\alpha</math>%(가산금리, Spread)'의 <math>\alpha</math>%를 의미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 드립니다. * 최초제안자 보안사항으로 <math>\alpha</math>%로 표시함</li> </ul>	<p>○ 질의에서 언급하신 위험보상율에 해당하는 가산금리(<math>\alpha</math>%)를 의미합니다.</p>	
9	<p>p.37 제12조 사업의 성실히행보장 (1) 본사업시설의 적기시공을 도모하고 사업의 중도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총사업비(주무관청이 보상비를 부담하는 경우 보상비 제외한 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현금,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을 주무관청에 납부하여야 하며, 동 보증금은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귀속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이행보증 대상 금액 산정시, 주무관청이 보상비를 부담하는</li> </ul>	<p>○ 제3자 제안공고 본문과 같이, '총사업비(주무관청이 보상비를 부담하는 경우 보상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p>	

구 분	질 의	답 변	비 고
연 번 (제3자 제안 공고)			
	<p>경우를 가정하여 ‘총사업비에서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건설사업비)’으로 산정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p>		
10	<p>p.48</p> <p>제6장 최초제안자 주요 제안내용</p> <p>1. 사업제안 개요</p> <p>(7) 출자자 현황: (가칭)미래에셋서울양주펀드, 포스코건설, 대보건설, 금광기업</p> <p>· 본 사업의 최초제안을 위한 사업제안서류 제출(문서번호:서울양주 2020-0001, 2020.08.31.) 당시에는 본 사업 사업시행자 (가칭) 서울양주고속도로주식회사의 대표자가 ‘(주)포스코건설’이었으나, 2023년 4월 4일 자로 본 사업 대표자 ‘(주)포스코건설’의 사명이 ‘(주)포스코이앤씨’로 변경되어 주무관청에 공문으로 송부(문서번호:서울양주 2023-01, 서울~양주 고속도로 대표회사 명칭변경 알림의 건, 2023.04.21.)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제3자 제안공고문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바, 향후 본 사업 진행상에 발생하는 모든 서류(제안서류 및 공문 등)에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주)포스코이앤씨’로 표기하여 작성 및 제출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p>	<p>○ 이미 확인된 사항으로 추가 증빙 불필요합니다.</p>	
11	<p>p.51</p> <p>2. 사업제안서의 규격 및 글자크기</p> <p>(1) 사업제안서는 3홀(hole) 좌철 바인더 또는 제본 형태로 제작함.</p> <p>(2) 표와 그림을 제외하고는 A4 용지 양면에 12point의 글자 크기를 사용하고, 줄 간격은 160%로 하여 분명하고 쉽게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작성함.</p> <p>(3) 재무분석 보고서 및 설계도면은 A3 용지를 사용할 수 있음.</p> <p>(4) 지도, 도면 등 A4보다 큰 규격의 종이를 사용할 때에는 같은 크기로 접거나 별도로 제출함.</p> <p>(5) 본보고서 제한 쪽수, 사업제안서의 규격 등을 위반할 경우 사업제안서평가단의 논의를 거쳐 20점 이내의 감점을 부여할 수 있음.</p> <p>· 상기 (5)의 본보고서의 범위가 ‘제2권 기술부문’, ‘제3권 수요부문’, ‘제4권 가격부문’을 의미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 드립니다.</p>	<p>○ 본보고서는 제2권 기술부문, 제3권 수요부문, 제4권 가격부문을 의미합니다.</p> <p>○ 분량제한이 있는 보고서에 A4 용지보다 큰 규격의 용지를 사용하는 경우 A4 용지 규격으로 환산(A4 용지 면적으로 나누어 올림)하여 쪽수를 산정합니다.</p> <p>○ 위치도, 노선도, 조감도는 제3자 제안공고(제29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간지, 목차, 조건표, 공백 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쪽수 산정에 포함됩니다.</p>	

구 분	질 의	답 변	비 고
연 번	(제3자 제안 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량제한이 있는 본 보고서의 경우 A4보다 큰 규격의 종이를 사용할 경우 1페이지로 간주되는지, 아니면 A4로 환산하여 산정되는지 질의 드립니다.</li> <li>· 본보고서에 위치도, 노선도, 조감도 등을 삽입할 경우, 쪽수 산정에 포함되는지 질의 드립니다.</li> <li>· 본보고서 대제목, 중제목 등은 12point 이상으로 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li> <li>· 상기 “(5) 본보고서 제한 쪽수, 사업제안서의 규격 등을 위반할 경우 사업제안서평가단의 논의를 거쳐 20점 이내의 감점을 부여할 수 있음.”은 본보고서만 적용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제목, 중제목 등도 12point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li> <li>○ 제3자 제안공고 ‘제29조 사업제안서 구성 및 분량’의 사업제안서에 해당합니다. 단, 공고문에 포함된 &lt;양식&gt;에 해당하는 경우 &lt;양식&gt;의 규격과 글자크기 등을 따르고 설계도면에 포함된 글자는 글자크기 및 줄간격 등 변경 가능합니다.</li> </ul>	
12	<p>p.52</p> <p>제27조 사업제안서 기본조건</p> <p>(1) 가격산출기준 : 가격산출은 (2020년6월30일)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제출함. 다만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 별도의 기준시점을 정하여 조정 또는 재산정할 수 있음.</p> <p style="text-align: center;">...</p> <p>(4) 물가변동률 : 연 2%를 기준으로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되, 구체적인 적용방법 및 적용률은 실시협약으로 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사업 공고일(2023년 8월 4일)을 기준으로 가격 산출 후 가격 산출기준일(2020년 6월 30일)로 환산하여 제안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격산출기준일의 가격 적용을 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li> <li>· 가격산출기준일의 가격을 적용하여 가격산출 시, 가격산출기준일의 가격이 없는 신규항목은 본 사업 공고일 기준을 기준으로 사업비 산정 후 가격산출기준일로 환산하여 산정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li> <li>· 본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된 사업비를 가격산출기준일인 2020년 6월 30일로 조정시, 제3자 제안공고에서 제시한 물가변동률(2%)과 한국은행 또는 통계청이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격기준일(2020년 6월 30일) 가격이 있을 경우는 그 가격을, 없을 경우는 공고일 기준의 사업비를 물가변동률(2%)을 적용하여 과거 가격기준일(2020년 6월 30일)의 가격으로 환산하여 산정합니다.</li> </ul>	
13	<p>p.56</p> <p>제28조 총사업비·운영비 및 운영수입 등의 산정</p> <p>(8) 사업제안자는 자기 책임으로 연차별 교통수요를 추정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사항은 교통인프라 사업에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li> </ul>	

구 분	질 의	답 변	비 고
연 번 (제3자 제안 공고)			
	<p>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통행료·운영수입을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함.</p> <p>① 사업제안자는 교통수요 추정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다음 사업들을 포함해 본 사업과 연관된 관련계획의 실현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교통수요 추정 결과가 제시되도록 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시계획 승인이 완료된 택지 또는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li> <li>- 협상대상자(우선협상대상자 포함) 지정 단계 이후의 민간투자사업</li> <li>-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한 재정사업</li> <li>- 본사업부지 인근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사업</li> <li>- 상기 이외의 실시계획이 착수 및 완료된 개별사업</li> </ul> <p>· 상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한 재정사업” 조항은 교통인프라 사업에 한해 사업제안서 작성시 교통수요 예측에 반영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p>		
14	<p>p.57 제28조 총사업비·운영비 및 운영수입 등의 산정</p> <p>(10) 초과수익 환수금(<math>\Sigma GR_i</math>)은 매년도 실제 운영수입에서 변동 운영비를 차감한 금액이 주무관청 환수기준금(=매년도 투자위험분담기준금 + 매년도 미보전대상 민간투자비 미회수액)을 초과하는 경우 주무관청에서 일정비율로 환수하는 금액으로 산정함.</p> <p>③ 보전대상 민간투자비의 기준차입금리는 지표금리(공고일 직전 5영업일의 5년 만기 국채수익률(최종호가수익률 기준) 단순평균값)와 위험보상율로 하며, 위험보상율은 사업제안</p>	<p>○ 지표금리는 기준시점의 값은 반올림 없이 그대로 사용하되, 최종 평균값을 구하는 단계에서 계산된 값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산정합니다.</p>	

구분	질 의	답 변	비 고
연 번 (제3자 제안 공고)			
	<p>자가 자율적으로 제시하되, 실시협약에서 확정하도록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표금리(공고일 직전 5영업일의 5년 만기 국채수익률(최종호가 수익률 기준) 단순평균값) 계산 시 소수점 반올림 기준(예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을 질의 드립니다.</li> </ul>		
15	<p>p.58 제29조 사업제안서 구성 및 분량</p> <p>p.110 (2) 사업제안서 중 본보고서, 부속서류, 사전적격심사 서류의 원본은 표지에 사업제안자의 명칭을 기재하고, <u>대표자(사업제안자가 법인일 경우는 동법인의 대표자, 설립예정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회사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인감을 날인</u> 하여야 하며, 매 쪽마다 간인을 하여야 함.</p> <p>&lt;양식 3&gt; 서약서</p> <p>1. 본 법인은 사업제안서류의 원본과 사본을 동일하게 작성하였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제안자가 설립예정법인인 경우 사업제안서 표지에 사업제안자의 명칭을 기재하고, 추가로 대표회사의 ‘대표이사명’을 표시하고 서명 또는 인감을 날인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li> <li>상기 &lt;양식3&gt; 서약서 내용과 같이 본보고서, 부속서류, 사전적격심사 서류의 표지에 사업제안자의 명칭을 기재하는 등 원본과 사본을 동일하게 작성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제안자가 설립예정법인인 경우 사업제안서 표지에 사업제안자의 명칭을 기재하고 “대표이사” 기재 후 서명 또는 인감을 날인하면 됩니다.</li> <li>○ 사업제안서 사본(표지 포함)에는 사업제안자의 명칭을 기재하지 않습니다.</li> </ul>	
16	<p>p.59 제29조 사업제안서 구성 및 분량</p> <p>p.63 (3) 사업제안서 이외에 본사업과 관련된 별도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본 1부 및 사본 10부를 따로 제출하여야 함. 단, 감사보고서(감사보고서가 없는 경우 재무재표 증명원)는 최근 3개년도의 연차별 보고서를 각 1부씩 제출함.</p> <p>제8장 사전적격심사 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감사보고서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도 감사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하되,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1부 제출하면 됩니다.</li> </ul>	

구 분	질 의	답 변	비 고												
연 번 (제3자 제안 공고)															
	<p>제33조 사업수행능력 (3) 재무능력 ④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으로 평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거 5년간의 회계감사보고서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자공시시스템(<a href="http://dart.fss.or.kr">http://dart.fss.or.kr</a>)에서 감사보고서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도 감사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li> <li>만약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면, 전자공시시스템(<a href="http://dart.fss.or.kr">http://dart.fss.or.kr</a>)에서 출력한 감사보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각 회사의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li> </ul>														
17	<p>p.57 제29조 사업제안서 구성 및 분량 p.58 (1) 사업제안서의 제출부수는 아래와 같으며, 제출자료가 누락 p.62 또는 미흡할 경우에는 실격 등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음.</p> <table border="1" data-bbox="371 938 1120 1066"> <thead> <tr> <th rowspan="2">평가구분</th> <th rowspan="2">사업제안 서류</th> <th rowspan="2">형식 및 분량</th> <th colspan="2">제출부수</th> </tr> <tr> <th>원 본</th> <th>사 본</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평가</td> <td>사전적격심사(PQ) 서류</td> <td>-</td> <td>1부</td> <td>10부</td> </tr> </tbody> </table> <p>제8장 사전적격심사 서류 제32조 출자자의 구성 및 현황 (2) 출자자의 연혁은 &lt;양식 7&gt;에 따라 작성함. ① 출자자의 연혁은 법인 설립이후 현재까지의 영업, 재무, 관계회사 투자 등 주요 특기사항을 간략하게 기재하되, <u>증빙서류</u>가 있는 경우 이를 부속서류로 첨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단계 평가 사전적격심사(PQ) 서류와 관련하여 사실확인 등을 위한 증명 또는 증빙서류를 별권의 형태(예로 부속서류)로 제출</li> </ul>	평가구분	사업제안 서류	형식 및 분량	제출부수		원 본	사 본	1단계평가	사전적격심사(PQ) 서류	-	1부	10부	<p>○ 사전적격심사서류와 관련하여, 사실확인 등을 위한 증명 또는 증빙서류를 별권의 형태로 제출 가능하며, 원본 1부, 사본 10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p>	
평가구분	사업제안 서류				형식 및 분량	제출부수									
		원 본	사 본												
1단계평가	사전적격심사(PQ) 서류	-	1부	10부											

구 분	질 의	답 변	비 고												
연 번 (제3자 제안 공고)															
	<p>하여도 무방한지, 무방하다면 1단계 평가 사전적격심사(PQ)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p> <p>· 1단계 평가 사전적격심사(PQ) 서류의 별권의 형태(예로 부속서류)가 제출이 가능한 경우, '형식 및 분량, 제출부수'는 2단계 평가 제7권 부속서류와 동일하게 제출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p>														
18	<p>p.51 제7장 사업제안서 작성 일반</p> <p>p.57 제26조 사업제안서 작성의 일반 지침</p> <p>p.58 1. 사업제안서 작성의 제반 사항</p> <p>p.72 (5) 사업제안서의 작성은 한글 프로그램과 호환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수치 자료 분석은 엑셀 등 스프레드 시트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u>사업제안서를 작성할 때 사용된 수치자료 및 설계도서는 USB로 제출하여야 함.</u></p> <p>제29조 사업제안서 구성 및 분량</p> <p>(1) 사업제안서의 제출부수는 아래와 같으며, 제출자료가 누락 또는 미흡할 경우에는 실격 등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음.</p> <table border="1" data-bbox="398 975 1117 1050"> <thead> <tr> <th rowspan="2">평가구분</th> <th rowspan="2">사업제안 서류</th> <th rowspan="2">형식 및 분량</th> <th colspan="2">제출부수</th> </tr> <tr> <th>원 본</th> <th>사 본</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제36조 가격 부문 평가서류 작성</p> <p>(5) 재정지원금 규모 산정을 위한 현금흐름을 &lt;양식 27&gt;에 따라 작성하며, 한글, 엑셀 등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하여 <u>전산 자료로 작성한 후 제출 하여야 함.</u></p> <p>· '사업제안서를 작성할 때 사용된 수치자료 및 설계도서는 USB로 제출하여야 함'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제3자 제안공고문 58페이지 '사업제안서 제출 서류'에는 '구조 및 수리계산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 재무모델' 3가지 서류만 USB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상기 3가지 서류 외 사업제안서류는 USB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p>	평가구분	사업제안 서류	형식 및 분량	제출부수		원 본	사 본						<p>○ 제3자 제안공고 내용 중 제출하도록 언급되어 있는 전산자료/USB는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p> <p>○ 질의하신 '제36조 가격부문 평가서류 작성'의 (5)에 해당하는 내용은 재무모델내 삽입하여 제출합니다.</p> <p>○ 사업제안서를 작성할 때 사용된 수치자료 및 설계도서는 USB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p>	
평가구분	사업제안 서류				형식 및 분량	제출부수									
		원 본	사 본												

구분	질 의	답 변	비 고																																									
연 번	(제3차 제안 공고)																																											
19	<p>p.65 제9장 2단계 평가서류 작성</p> <p>p.66 제34조 기술 부문 평가서류 작성</p> <p>(3) 제2권 본보고서(기술부문)의 제1장 요약은 다음의 양식의 설계요약표를 포함하여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함.</p> <table border="1" data-bbox="344 619 1120 951"> <thead> <tr> <th colspan="2">구분</th> <th>단위</th> <th>수량</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8">공사비</td> <td>전체 설계 공사비</td> <td>억원</td> <td></td> <td></td> </tr> <tr> <td>적용 낙찰율</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2">토공구간</td> <td>전체공사비</td> <td>억원</td> <td></td> <td></td> </tr> <tr> <td>1km당 공사비</td> <td>억원</td> <td></td> <td></td> </tr> <tr> <td rowspan="2">교량구간</td> <td>전체공사비</td> <td>억원</td> <td></td> <td></td> </tr> <tr> <td>1km당 공사비</td> <td>억원</td> <td></td> <td></td> </tr> <tr> <td rowspan="2">터널구간</td> <td>전체공사비</td> <td>억원</td> <td></td> <td></td> </tr> <tr> <td>1km당 공사비</td> <td>억원</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설계요약표의 구간별(토공, 교량 및 터널구간) 공사비가 적용 낙찰률을 반영한 공사비인지 질의 드립니다.</p>	구분		단위	수량	비고	공사비	전체 설계 공사비	억원			적용 낙찰율	%			토공구간	전체공사비	억원			1km당 공사비	억원			교량구간	전체공사비	억원			1km당 공사비	억원			터널구간	전체공사비	억원			1km당 공사비	억원			<p>○ 구간별(토공, 교량, 터널) 공사비는 적용 낙찰률을 반영하지 않은 설계 공사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p>	
구분		단위	수량	비고																																								
공사비	전체 설계 공사비	억원																																										
	적용 낙찰율	%																																										
	토공구간	전체공사비	억원																																									
		1km당 공사비	억원																																									
	교량구간	전체공사비	억원																																									
		1km당 공사비	억원																																									
	터널구간	전체공사비	억원																																									
		1km당 공사비	억원																																									
20	<p>p.71 제35조 수요 부문 평가서류 작성</p> <p>(7) 교통수요 추정결과를 제시함.</p> <p>④ 사업제안자는 기준통행료 및 기준통행료의 1.05배의 통행요금 징수에 대한 교통수요와 본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통행료 및 교통수요에 대한 요금탄력도 등의 분석을 포함하여야 하고, 그 추정방법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p> <p>- 본사업노선 인근 유료도로나 민자도로의 경우 각 도로의 관</p>	<p>○ 「유료도로법」 등을 고려하여, 사업제안자가 적정요금체계를 전제하여 제안하길 바랍니다.</p>																																										

구 분	질 의	답 변	비 고
연 번 (제3자 제안 공고)			
	<p>리운영기간을 고려하여 필요시 통행요금 변경사항을 적용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근 민자도로의 관리운영권 종료 이후 요금징수방안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어, 관리운영 종료 이후의 민자도로의 요금징수 계획을 한국도로공사 통합요금 부과체계(고속국도 입구요금소에서 출구요금소 통행시 기본요금 1회 부과) 전제하에 제안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li> </ul>		
21	<p>p.74 , p.75</p> <p>제37조 설계도서 (3) 용지확보계획서의 목차와 내용은 다음과 같이 작성함.</p> <p>① 보상비 산정기준 및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의 개요, 사업노선의 입지 및 현황을 고려하여 토지보상비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기획재정부, 2022.12.)”을 참고하여 토지보상비는 최근 개별공시지가 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함.</li> <li>- 본사업에 적용할 토지보상비 산정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토지보상비, 지장물 보상비, 이주대책비 등의 보상비 산출방법을 기술함.</li> </ul> <p>④ 예상보상비 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상비 집계표 : 원활한 평가를 위하여 용지보상비는 편입면적을 계산한 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기획재정부, 2022.12.)”을 참고하여 산출하며 노선이 지나는 곳에 있는 지장물이나 각종시설에 대한 보상비 등은 별도 산출하여 이를 보상비에 포함함.</li> <li>- 필지별 내역서 : 정확한 보상비 산정을 도모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기획재정부, 2022.12.)”에 따라</li> </ul>	<p>○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총괄지침(기획재정부, 2022.12)을 참고하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감정평가, 주변보상사례 등을 고려하여 적용합니다.</p>	

구분	질 의	답 변	비 고
연 번 (제3자 제안 공고)			
	<p>개별필지에 대한 보상비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내역서에는 지번, 지목, 편입면적, 공시지가, 보상비 등이 수록되어야 하며, 사업시행으로 인한 편입지역과 중점검토지역의 세부검토 자료를 포함하여야 함.</p> <p>·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개별용지에 대해 사업자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p>		
22	<p>p.78 , p.83</p> <p>제41조 1단계 평가항목 및 기준 (2) 1단계 평가결과는 ‘통과’ 또는 ‘탈락’만을 구분하며, 2단계 평가점수와 연계하지 않음. ② 1단계 평가를 통과하여 적격자로 개별 통보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③ ②에 따른 적격자 통보 이후 2단계 평가 사업제안서 제출일까지 적격자 통보를 받은 사업제안자가 1단계 평가 통과를 위한 자격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사업제안자는 2단계 평가를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음.</p> <p>제43조 사업수행능력 평가 4. 재무능력(F) (1)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모든 투자자는 아래 ① 또는 ② 가운데 한 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 및 동법 제335조의 3에 따라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사 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국가공인 신용평가</p>	<p>○ 사업제안자가 1단계 평가를 통과 후 2단계 평가 사업제안서 제출일 이전에 신용등급 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단계 평가 사업제안서 제출일 이전 재평가를 받아 1단계 평가 기준을 만족 시 2단계 평가를 위한 사업제안서 제출 자격이 유지됩니다. 단, 증빙자료를 주무관청에 제출·확인받아야 합니다.</p> <p>○ 신용평가서는 공고기준일 이전 평가받은 것만 인정이 되고 미공시된 신용평가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p>	

구분	질 의	답 변	비 고
연 번 (제3자 제안 공고)			
	<p>기관(NRSRO)이 <u>공고기준일 이전 가장 최근에 출자자의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하여 평가한 신용등급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자예정금액이 300억원 이상의 출자자의 경우 회사채는 BBB- 이상, 기업어음은 A3-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경우</li> <li>- 출자예정금액이 300억원 미만의 출자자의 경우 회사채는 BB- 이상, 기업어음은 B0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경우</li> <li>- 회사채 및 기업어음은 본 공고일 기준으로 평가기관의 평가 결과에 대한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것</li> </ul> <p>· 본 공고일 기준 출자자의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평가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한 유효기간이 남아있고, 공고기준일 이전 가장 최근에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하여 평가한 신용등급이 상기 '재무능력(F)' 평가 조항을 만족하여 1단계 평가 통과 이후, 상기 유효기간이 2단계 평가 사업제안서 제출일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 2단계 사업제안서 제출일 이전에 재평가 받아 상기 '재무능력(F)' 조항의 출자예정금액별 신용등급을 만족하면 2단계 평가를 위한 사업제안서 제출 자격 유지가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p> <p>· 신용평가서는 공고기준일 이전 평가를 받은 것만 인정되는지, 미공시된 신용평가서를 제출해도 상기 재무능력을 충족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p>		
23	<p>p.78 , p.79</p> <p>제42조 제출서류 심사</p> <p>(2) 사업제안자는 다음 ① ~ ③의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고, 각 제출서류는 평가항목별 세부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p> <p>③ 출자자의 구성&lt;양식 5&gt;, 출자자 현황&lt;양식 6&gt;, 출자자 연혁&lt;양식 7&gt;, 출자자의 주주현황&lt;양식 8&gt;, 출자자의 손익계산서&lt;양식 9&gt;, 출자자의 재무상태표&lt;양식 9-1&gt;, 투자확약</p>	<p>○ '타인자본' 전액을 차입예정금액으로 계획할 경우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합니다.</p>	

구 분	질 의	답 변	비 고
연 번 (제3자 제안 공고)			
	<p>서 등(&lt;양식 16-1~16-8&gt;, 조건부 대출확약서 등(&lt;양식 17-1~17-2&gt;)</p> <p>- 차입예정금액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등의 대출확약서 또는 조건부 대출확약서를 제출하고, 타인자본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p> <p>· ‘타인자본’ 전액을 ‘차입예정금액’으로 계획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p>		
24	<p>p.81 제43조 사업수행능력 평가</p> <p>2. 설계능력(D)</p> <p>(2) (1)의 ① 및 ②에서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한 실적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p> <p>③ 설계회사가 공동도급 형태로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20% 이상의 비율로 참여한 설계용역만을 인정하되, 해당 비율을 적용한 연장을 실적으로 인정하며, <u>사업제안자(컨소시엄)에 다수의 설계회사가 참여하는 경우 참여한 설계회사들의 실적을 합산 가능함.</u></p> <p>③ <u>설계회사가 컨소시엄의 형태로 설계용역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20% 이상의 비율로 참여한 설계용역만을 인정하되, 동 설계회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 비율의 전체 합계가 100% 이상이어야 함.</u></p> <p>· 실시설계용역 실적 산정과 관련하여 ③항이 두 번 명기되어 있는데, 첫번째 ③항의 “다수의 설계회사가 참여하는 경우 참여한</p>	<p>○ 중복 표기된 ③중 아래 ③은 ④를 의미합니다.</p> <p>○ 위의 ③은, 설계회사가 공동도급의 형태로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20% 이상의 비율로 참여한 설계용역을 인정하되, 사업제안자(컨소시엄)에 다수의 설계회사가 참여하는 경우 설계회사들의 실적연장*을 합산한 것이 1,000m 이상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p> <p>* (예시) A사가 2km 터널공사에 30% 비율로 참여시 600m인정</p> <p>○ 다만, 설계회사가 민간투자사업 등에 컨소시엄(사업제안자로 참여) 형태로 수행한 경우(아래③, 즉④)의</p>	

구분	질 의	답 변	비 고
연 번 (제3자 제안 공고)			
	<p>설계회사들의 실적을 합산 가능”과 두 번째 ③항 “동 설계회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 비율의 전체 합계가 100% 이상이어야 함”이 서로 배치되는 평가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두번째 ③항에는 다수의 설계사 참여시 모든 설계사가 각각 100%이상의 참여지분이 필요(실적합산 불가이 불가하여 첫 번째 ③항과 배치)</p> <p>사업제안자(컨소시엄)에 다수의 설계회사가 참여할 경우 참여한 설계회사들이 공동도급 형태로 20% 이상 비율로 참여한 설계용역 비율 전체 합계가 100%이상인 경우 설계능력을 인정받는 것 인지 질의 드립니다.</p> <p>· ‘첫 번째 ③항’의 ‘설계회사가 공동도급 형태로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우’와 ‘두 번째 ③항’의 ‘설계회사가 컨소시엄의 형태로 설계용역을 수행하였을 때’의 의미가 서로 다른 의미인지 질의 드립니다.</p>	<p>실적은 해당 설계사가 20% 이상의 비율로 참여한 설계용역만을 인정하되, 해당 설계회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 비율의 합계가 100% 이상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p>	
25	<p>p.82 제43조 사업수행능력 평가</p> <p>3. 시공능력(B)</p> <p>(1) 본사업에 <u>교량 또는 터널 공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터널 또는 교량은 별표 1 “공종별 동일공사의 범위”에서 정한 공사실적을 가진 자가 시공하여야 함.</u> &lt;양식 13~14, 별표 1&gt;</p> <p>(2) 상기 (1)의 조건을 만족하는 동시에, 다음 ① 또는 ② 중 한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시공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함.</p> <p>① 사업제안자 또는 그 출자자가 시공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2023년도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평가액” 중 토목건축공사업종 시공능력평가액이 해당 사업제안자 또는 출자자가 본사업에서 도급받는 도급예정액의 1.0배 이상인 경우. 이 경우, 해당 시공회사는 &lt;양식</p>	<p>○ 공사 구간을 분할하여 시공하는 경우, 각 구간 공사에 참여하는 시공회사는 해당구간의 특성에 따른 시공능력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p>	

구 분	질 의	답 변	비 고
연 번 (제3자 제안 공고)			
	<p>15&gt;에 따라 시공 참여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 사업에 교량 또는 터널 공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기 '3. 시공능력(B)의 (1)' 조항을 충족하기 위한 공사실적은 전체 공사의 최대 시공지분을 갖는 시공회사의 실적이 충족하면 되는지, 아니면 공구 분할시 각 공구에 교량 또는 터널 공종을 실제 시공하기로 예정된 시공회사(각 공구별 대표 시공회사)의 실적이 만족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li> </ul>		
26	<p>p.83</p> <p>제43조 사업수행능력 평가</p> <p>4. 재무능력(F)</p> <p>(2) 본 공고일 현재 개인,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기업 또는 위 (1)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출자자의 경우 제3자(다른 출자자 등)의 출자보증서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출자자의 자본금 투입예정금액 이상의 대출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재무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함. 이 경우 제3자가 상기 (1)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본사업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출자자 기준을 충족한 후의 잔여 순현금흐름을 기준으로 평가함.</p> <p>· 재무능력 평가를 위해 제3자(다른 출자자 등)의 출자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3자의 범위에 제한이 있는지, 만약 제한이 있다면 구체적인 제한 조건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p>	<p>○ 제3자의 출자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3자의 범위에 제한은 없습니다.</p>	
27	<p>p.10</p> <p>2</p> <p>제48조 가격부문 평가항목</p> <p>1. 통행료율(200점)</p> <p>(3) 통행료율 산정기준</p> <p>① 통행료율 산정의 기준통행료 및 제안통행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됨.</p>	<p>○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방식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5-1530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 <p><b>통행요금 = 기본요금 + 주행요금(주행거리×km당 주행요금 단가)</b></p> <p>○ 기본요금 : 폐쇄식 900원/대, 개방식 720원/대</p> <p>※ 2차로 구간 : 50% 할인</p>	

구 분	질 의	답 변	비 고																		
연 번 (제3자 제안 공고)																					
	<p>- 기준통행료 <math>P'_{ij} = 900 + 44.3 \times [l_{ij}^4 \times 1.0 + l_{ij}^6 \times 1.2]</math></p> <p><math>P'_{ij}</math> : 구간 i-j의 기준통행요금(1종기준)</p> <p><math>l_{ij}^4, l_{ij}^6</math> : 4차로와 6차로 각각의 연장(6차로 이상은 20% 할증)</p> <p>·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기준 산정시, 2차로 구간에는 50% 할인요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본 사업 구간 중 본선이외의 구간에 2차로가 계획될 경우를 감안하여 기준통행료 산정식을</p> <p><math>P'_{ij} = 900 + 44.3 \times [l_{ij}^4 \times 1.0 + l_{ij}^6 \times 1.2]</math>로 반영하여 산정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p>	<p>o km당 주행요금 단가(4차로 기준)</p> <table border="1" data-bbox="1160 400 1982 890"> <thead> <tr> <th>구 분</th> <th>대 상 차 량</th> <th>주행요금 (원/km)</th> </tr> </thead> <tbody> <tr> <td>1종 (소형차)</td> <td>2축차량, 율폭 279.4mm이하 (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td> <td>44.3(1.00)</td> </tr> <tr> <td>2종 (중형차)</td> <td>2축차량, 율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이하 (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td> <td>45.2(1.02)</td> </tr> <tr> <td>3종 (대형차)</td> <td>2축차량, 율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초과 (대형승합차, 2축 대형화물차)</td> <td>47.0(1.06)</td> </tr> <tr> <td>4종 (대형화물차)</td> <td>3축 대형화물차</td> <td>62.9(1.42)</td> </tr> <tr> <td>5종 (특수화물차)</td> <td>4축이상 특수화물차</td> <td>74.4(1.68)</td> </tr> </tbody> </table> <p>※ 2차로 구간 : 50% 할인, 다차로 구간(6차로 이상) : 20% 할증</p>	구 분	대 상 차 량	주행요금 (원/km)	1종 (소형차)	2축차량, 율폭 279.4mm이하 (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44.3(1.00)	2종 (중형차)	2축차량, 율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이하 (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	45.2(1.02)	3종 (대형차)	2축차량, 율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초과 (대형승합차, 2축 대형화물차)	47.0(1.06)	4종 (대형화물차)	3축 대형화물차	62.9(1.42)	5종 (특수화물차)	4축이상 특수화물차	74.4(1.68)	
구 분	대 상 차 량	주행요금 (원/km)																			
1종 (소형차)	2축차량, 율폭 279.4mm이하 (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44.3(1.00)																			
2종 (중형차)	2축차량, 율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이하 (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	45.2(1.02)																			
3종 (대형차)	2축차량, 율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초과 (대형승합차, 2축 대형화물차)	47.0(1.06)																			
4종 (대형화물차)	3축 대형화물차	62.9(1.42)																			
5종 (특수화물차)	4축이상 특수화물차	74.4(1.68)																			
28	<p>p.10 제48조 가격부문 평가항목</p> <p>2, 2. 통행료율(200점)</p> <p>p.10 (3) 통행료율 산정기준</p> <p>3 ① 통행료율 산정의 기준통행료 및 제안통행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됨.</p> <p>- 제안통행료는 기준통행료 대비한 배수를 적용하되 1.05배를 초과하지 않게 제시해야 함.</p> <p>③ 통행료율 산정식</p>	<p>o 기준통행료 대비 1.05배로 제한한 제안통행료는 전체 거리에 대한 거리가중제안통행료를 의미하며, 구간별로 별도로 제한한 사항은 없습니다.</p>																			

구분	질 의	답 변	비 고
연 번 (제3자 제안 공고)			
	<p>- 통행료율</p> $\text{통행료율} = \frac{[\sum (P_{ij} \times L_{ij}) / \sum L_{ij}] : \text{거리가중 제안통행료(VAT 포함)}}{[\sum (P'_{ij} \times L_{ij}) / \sum L_{ij}] : \text{거리가중 기준통행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안통행료 산정 시, 모든 구간에서 기준통행료 대비 동일한 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구간별로 상이한 배수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li> <li>만약 구간별 상이한 배수 적용이 가능하다면 '기준통행료 대비 1.05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 전체 거리에 대한 거리가중 제안통행료(③통행료율 산정식에 제시된 통행료율(X))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각각의 구간별 제안통행료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li> </ul>		
29	<p>p.10 6</p> <p>&lt;양식 1&gt;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③ 대표자/대표출자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기 양식의 '대표자/대표출자자'는 제3자 제안공고문 3페이지, "(15) 대표자 : 사업제안자의 출자자를 대표하는 1인의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로서, 사업제안서 제출, 협상, 실시계획 수립을 포함한 본사업 시행과 관련한 전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의 '대표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li> </ul>	<p>○ &lt;양식 1&gt;의 ③에서의 대표자/대표출자자는 제3자 제안공고문 3페이지의 '(15) 대표자'를 의미합니다.</p>	
30	<p>p.11 7, p.11 8</p> <p>&lt;양식 9&gt; 출자자의 손익계산서 &lt;양식 9-1&gt; 출자자의 재무상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자자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작성기준은 '별도 재무제표'인지 또는 '연결 재무제표'인지 질의 드립니다.</li> <li>감사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도 상기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과 동일한 기준으로 제출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li> <li>손익계산서 과목 중 일부항목(경상이익, 특별이익, 특별손실)이 없는 경우 칸을 삭제 하고 제출해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li> </ul>	<p>○ 출자자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는 개별 재무제표를 의미하며 감사보고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손익계산서 과목 중 일부항목이 없는 경우도 감사보고서 상 제시된 손익계산서와 동일하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p>	

구 분	질 의	답 변	비 고								
연 번  (제3자 제안 공고)											
31	<p>p.12 0 &lt;양식 10-1&gt; 실시설계시공 일괄입찰 설계용역 낙찰실적증명서 &lt;양식 13&gt; 시공실적 증명서</p> <p>p.12 3 &lt;양식 14&gt; 시공실적(기성율) 증명서</p> <p>p.12 4 · “&lt;양식 10-1&gt; 실시설계시공 일괄입찰 설계용역 낙찰실적증명서, &lt;양식 13&gt; 시공실적 증명서, &lt;양식 14&gt; 시공실적(기성율) 증명서” 양식과 발주처(발급기관) 양식이 상이할 경우(발주처의 전자 준공실적 증명서 발급시스템 활용으로 전자 준공/시공실적 증명서 포함) 제출 및 인정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p> <p>p.12 5 · “&lt;양식 10&gt; 실시설계용역 수행실적, &lt;양식 10-1&gt; 실시설계시공 일괄입찰 설계용역 낙찰실적증명서, &lt;양식 13&gt; 시공실적 증명서, &lt;양식 14&gt; 시공실적(기성율) 증명서” 서류관련 증명 또는 증빙서류(계약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등)는 1단계 평가 사전적격심사(PQ) 서류와 관련하여 별권의 형태(예로 부속서류)로 제출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p>	<p>○ 발주기관(발급기관)의 ‘전자 준공실적 증명서 발급시스템 활용을 통한 준공/시공실적증명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양식에 있는 내용은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p> <p>○ 질의하신 해당 양식의 별권 제출 가능합니다.</p>									
32	<p>p.12 7 (별표 1) 공종별 동일공사의 범위</p>	<p>○ (별표1) 의 교량 등급은 위부터 순서대로 A,B,C,D로 다음과 같이 적용하시면 됩니다.</p> <table border="1" data-bbox="1205 1078 1962 1297"> <tbody> <tr> <td>A등급</td> <td>- 현수교, 사장교 - 경간 200m 이상 포함 교량</td> </tr> <tr> <td>B등급</td> <td>- 연도교, 연속교 해상교량, 아치교, 트러스교 - 경간 200m 미만 100m 이상 포함 교량</td> </tr> <tr> <td>C등급</td> <td>- 경간길이 50m 이상 포함 교량, 연장 1,000m 이상의 일반 교량(경간 10m 이상)</td> </tr> <tr> <td>D등급</td> <td>- 500m 이상의 일반교량(경간 10m 이상)</td> </tr> </tbody> </table>	A등급	- 현수교, 사장교 - 경간 200m 이상 포함 교량	B등급	- 연도교, 연속교 해상교량, 아치교, 트러스교 - 경간 200m 미만 100m 이상 포함 교량	C등급	- 경간길이 50m 이상 포함 교량, 연장 1,000m 이상의 일반 교량(경간 10m 이상)	D등급	- 500m 이상의 일반교량(경간 10m 이상)	
A등급	- 현수교, 사장교 - 경간 200m 이상 포함 교량										
B등급	- 연도교, 연속교 해상교량, 아치교, 트러스교 - 경간 200m 미만 100m 이상 포함 교량										
C등급	- 경간길이 50m 이상 포함 교량, 연장 1,000m 이상의 일반 교량(경간 10m 이상)										
D등급	- 500m 이상의 일반교량(경간 10m 이상)										

구 분	질 의	답 변	비 고
연 번	(제3자 제안 공고)		

공 종	등 급	공고일로부터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준공실적
교 량	- 현수교, 사장교 - 경간 200m 이상 포함 교량	- 길이200m 이상 A등급 교량 * 단 현수교, 사장교는 100m 이상
	- 연도교, 연육교 해상교량, 아치교, 트러스교 - 경간 200m 미만 100m 이상 포함 교량	- 길이 200m 이상 A, B등급 교량 * 단 현수교, 사장교는 100m 이상
	- 경간길이 50m 이상 포함 교 량, 연장 1,000m 이상의 일 반 교량(경간 10m 이상)	- 길이 100m 이상 A, B, C등급 교량
	- 500m 이상의 일반교량(경간 10m 이상)	- 길이 100m 이상 A, B, C, D등급 교량
		* 최소규모: 최소교폭 7.2m 이상 단위교량으 로서 교통시설만 인정
터 널		단일구조물(체)로써 1,000m 이상 도로 터널 공사(개착식 터널 제외) *최소규모: 2차로 이상의 단위터널(폭7.2m)

○ 사업제안자의 설계내용에 있는 교량의 등급에 해당하는 실적만 제출하면 됩니다.

· ‘(별표 1) 공종별 동일공사 범위’에 교량 공종 ‘등급’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 교량등급 확인이 어렵습니다.

A등급	- 현수교, 사장교 - 경간 200m 이상 포함 교량
B등급	- 연도교, 연육교 해상교량, 아치교, 트러스교 - 경간 200m 미만 100m 이상 포함 교량
C등급	- 경간길이 50m 이상 포함 교량, 연장 1,000m 이상의 일반 교량(경간 10m 이상)
D등급	- 500m 이상의 일반교량(경간 10m 이상)

사업제안서 작성시 교량등급에 대해 상기 표와 같이 적용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 시공능력 평가 기준인 (별표1) 중 교량실적을 충족하기 위한 실적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사업제안자의 설계내용에 D등급 교량만 있을 경우 D등급 교량실적만 제출하면 상기 시공능력을 충족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구 분	질 의	답 변	비 고
연 번	(제3자 제안 공고)		
33	<p>p.12 &lt;양식 13&gt; 시공실적 증명서 3, 주) 6.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u>간인(서명)</u>을 하여야 p.12 함.</p> <p>4, (별표 2)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 기준 p.12 2. 시공실적 제출에 필요한 관련서류 목록 8 다. 공동도급실적의 경우는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원 본 제시 또는 <u>사본(원본대조필)</u> 제출</p> <p>· ‘주) 6.의 간인(서명)’은 시공능력을 인정받고자 ‘시공실적 증명서’를 제출하는 ‘해당 시공회사의 간인(서명)’을 의미하는 것인 지, 공동도급실적의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를 사본 제출할 경 우에도 원본대조필은 시공능력을 인정받고자 ‘시공실적 증명서’ 를 제출하는 ‘해당 시공회사의 원본대조필’을 의미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시공회사의 간인(서명)을 의미합니다.</li> <li>○ 공동도급실적의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를 사본 제 출하는 경우 발급기관의 ‘원본대조필’을 의미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해당시공회사(대표자)가 사실관 계를 확인한 후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합니다.</li> </ul>	
34	<p>p.12 &lt;양식 13&gt; 시공실적 증명서 3, (별표 2)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 기준 p.12 3. 시공실적 심사기준 4, 나. 시공실적 내용 p.12 2) 공동도급계약의 실적 인정 8 가) 공동이행도급으로 이행한 실적의 경우 규모 및 금액 p.12 의 실적인정은 시공비율만큼 실적으로 인정함. 다만, 당해 9 회사가 실질적으로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회사 실 적으로 인정하되, 실적증명서에 <u>공동수급체별 시공내용이 기재되고 구성원 전체의 날인과 발주기관의 증명이 있는 경우만 인정한다. (도급계약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첨 부)</u></p> <p>· ‘시공실적증명서’는 발주기관(발급기관)에 따라 서류의 명칭(예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주기관(발급기관)에 따라 시공실적증명서의 양식 등이 상이하더라도 해당 서류 제출 가능합니다.</li> <li>○ 공동도급으로 이행한 시공실적의 경우, 구성원 전체 의 날인이 있는 공동수급협정서와 해당시공회사의 날인이 있는 시공실적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li> <li>○ 발주기관(발급기관)의 ‘전자 준공실적 증명서 발급시 스템 활용을 통한 준공/시공실적증명서’는 해당시공 회사(대표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원본대조필을</li> </ul>	

구분	질 의	답 변	비 고
연 번 (제3자 제안 공고)			
	<p>준공실적증명서 등) 및 양식, 일부 기재사항 등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도급(공동이행도급)으로 이행한 시공실적을 제출하는 경우, '실적증명서에 공동수급체별 시공내용이 기재되고 구성원 전체의 날인과 발주기관의 증명이 있는 경우만 인정한다.'고 제시되어 있는데, '첨부된 공동수급협정서에 구성원 전체의 날인이 있고, 발주기관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공실적 증명서에 구성원 전체의 날인을 하지 않고 실적증명을 받고자 하는 해당 시공회사의 날인(간인 포함)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li> <li>• 또한, 발주기관(발급기관)의 '전자 준공실적 증명서 발급시스템 활용을 통한 준공/시공실적증명서'는 날인을 하는 서류가 아니므로 날인 없이 원본서류 그대로 제출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li> <li>• 발주기관(발급기관)에서 발급 받은 시공실적증명서(전자 준공/시공실적증명서 포함)에 기재된 '회사명 또는 대표자(시공실적증명서에 기재된 공동도급사 포함)'가 준공시 대비 변경 등으로 본 사업 공고기준일 기준으로 제출한 타 서류(사본으로 첨부한 도급계약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포함)와 다를 경우에 '별도 사유서' 없이 제출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li> </ul>	<p>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주기관(발급기관)에서 발급 받은 시공실적증명서(전자 준공/시공실적증명서 포함)에 기재된 '회사명 또는 대표자'가 준공시 대비 변경 등으로 제출한 타 서류와 다를 경우에 관련 증빙서류 또는 '별도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li> </ul>	
35	<p>p.63 , p.12 9</p> <p>제33조 사업수행능력 (2) 시공능력 ② 시공능력에 대하여는 발급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p> <p>(별표 2)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 기준 3. 시공실적 심사기준 나. 시공실적 내용 2) 공동도급계약의 실적 인정 가) 공동이행도급으로 이행한 실적의 경우 규모 및 금액의 실적인정은 시공비율만큼 실적으로 인정함. 다만, 당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주기관과 발급기관이 상이한 경우에도 발주기관의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li> </ul>	

구분	질 의	답 변	비 고
연 번 (제3자 제안 공고)			
	<p>회사가 실질적으로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회사 실질적으로 인정하되, 실적증명서에 공동수급체별 시공내용이 기재되고 구성원 전체의 날인과 발주기관의 증명이 있는 경우만 인정한다. (도급계약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첨부)</p> <p>· 시공실적증명서의 발주기관과 발급기관이 서로 상이할 경우(예로,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발주공사를 대한건설협회 또는 조달청 등에서 발급 받은 시공실적증명서, 발주기관의 증명은 없는 경우)에도 상기 '(2)시공능력' 및 '(별표2)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을 만족하여 시공실적증명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p>		
36	<p>p.13 2~</p> <p>&lt;양식 15&gt; 시공참여확약서 제안법인 시공 참여회사 대 표 자 (인)</p> <p>&lt;양식 16-1&gt; 투자확약서 제안법인 대 표 자 (인)</p> <p>&lt;양식 16-2&gt; 조건부 투자확약서</p> <p>&lt;양식 16-3&gt; 투자확약서(후순위주주차입금)</p> <p>&lt;양식 16-4&gt; 조건부 투자확약서(후순위주주차입금)</p> <p>&lt;양식 16-5&gt; 추가투자확약서</p> <p>&lt;양식 16-6&gt; 조건부 추가투자확약서</p> <p>&lt;양식 16-7&gt; 추가투자확약서(후순위주주차입금)</p>	<p>○ &lt;양식 15&gt;의 하단부에 제안법인명, 시공 참여회사명을 기입하고 날인하는 대표자는 시공참여회사의 대표자입니다.</p> <p>○ &lt;양식 16-1&gt; ,&lt;양식 16-2&gt;, &lt;양식 16-3&gt;, &lt;양식 16-4&gt;, &lt;양식 16-5&gt;, &lt;양식 16-6&gt;, &lt;양식 16-7&gt;, &lt;양식 16-8&gt;,&lt;양식 17-1&gt;,&lt;양식 17-2&gt;는 하단부에 기재된 '제안법인'은 확약서 제출을 위한 각 양식에 날인하는 회사명을 의미합니다.</p>	

구분	질 의	답 변	비 고
연 번 (제3자 제안 공고)			
	<p>&lt;양식 16-8&gt; 조건부 추가투자확약서(후순위주주차입금)</p> <p>&lt;양식 17-1&gt; 조건부 대출확약서</p> <p>&lt;양식 17-2&gt; 조건부 추가대출확약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양식 15&gt; 하단부에 기재된 ‘제안법인’은 본 사업을 제안하는 ‘(가칭)XXX주식회사’를 의미하는 것인지, 본 양식에 날인하는 ‘시공 참여회사’와 동일한 회사명을 의미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li> <li>• &lt;양식 16-1&gt;, &lt;양식 16-2&gt;, &lt;양식 16-3&gt;, &lt;양식 16-4&gt;, &lt;양식 16-5&gt;, &lt;양식16-6&gt;, &lt;양식16-7&gt;, &lt;양식 16-8&gt;, &lt;양식 17-1&gt;, &lt;양식 17-2&gt; 하단부에 기재된 ‘제안법인’은 본 사업을 제안하는 ‘(가칭)XXX주식회사’가 아닌 확약서 제출을 위해 각 양식에 날인하는 회사명을 의미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li> </ul>		
37	<p>&lt;양식 20&gt; 지자체 등 협의현황</p> <p>&lt;양식 21&gt; 조직도</p> <p>&lt;양식 34&gt; 기업집단 구성명세</p> <p>&lt;양식 35&gt; 특수관계자 명세</p> <p>&lt;양식 36&gt; 보험가입 계획서</p> <p>&lt;양식 37&gt; 통행료 산정을 위한 총민간사업비</p> <p>&lt;양식 38&gt; 주요 재무사항 요약표</p> <p>&lt;양식 39&gt; 주요 재무사항 민감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양식 34&gt;, &lt;양식 35&gt;는 제출시기가 명시되지 않아, 해당 양식은 1단계 사전적격심사(PQ)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또한, 출자자에 한정하여 작성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li> <li>• &lt;양식 20&gt;, &lt;양식 21&gt;, &lt;양식 36&gt;, &lt;양식 37&gt;, &lt;양식 38&gt;, &lt;양식 39&gt;는 해당 양식을 활용하여 본보고서에 사업제안자가 자유롭게 편집하여 활용해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li> </ul>	<p>○ &lt;양식 34&gt;,&lt;양식 35&gt;는 1단계 사전적격심사(PQ)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p> <p>&lt;양식 20&gt;,&lt;양식 21&gt;,&lt;양식 36&gt;,&lt;양식 37&gt;,&lt;양식 38&gt;,&lt;양식 39&gt;는 해당 양식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는 수준에서 약간의 편집은 허용됩니다.</p>	

(B사)

구 분	질 의	답 변	비 고
38	<p>p.4</p> <p>제1조 용어의 정의</p> <p>(19) 물가변동비 : 가격산출 기준일(2020년 6월 30일)로부터 본 사업시설 준공예정일까지의 물가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비의 변경분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를 말함. 단, 최초 통행료 결정을 위한 물가변동비는 실제 준공시까지 발생한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한 물가변동비를 말함.</p> <p>· 가격산출 기준일부터 제3자 공고 시점까지 물가상승률은 실제 물가상승률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제3자 공고문에서 제시한 2%를 적용하면 되는지 질의합니다.</p>	<p>○ 물가변동률은 제3자 제안공고에 명시된 연 2%를 적용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되, 구체적인 적용 방법 및 적용률은 실시협약으로 정합니다.</p>	
39	<p>p.8</p> <p>제1조 용어의 정의</p> <p>(62) 제세공과금 : 본사업에 대하여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 및 공과금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을 말함.</p> <p>·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경우 비과세로 판단하여 적용하면 되는지 질의합니다.</p>	<p>○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228호)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p>	
40	<p>p.13</p> <p>제4조 사업의 범위</p> <p>(2) 사업구간</p> <p>③ 사업제안자는 ‘광석지구택지개발사업’ 및 ‘복지지구 지구단위 계획’ 등 사업구간 인근의 개발계획을 고려하여 노선의 주요통과구간을 검토하여야 함(사업제안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양주시와 사전협의 후 그 결과에 대한 검토내용 등을 제시할 것).</p> <p>·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양주시 등과 사전협의 결과 진출입로(IC) 등을 추가할 경우, 원인가 부담을 전제로 해당 사업비는 건설사업비 및 건설보조금 산정시 제외하여 되는지 질의합니다.</p>	<p>○ 진출입로(IC)의 위치 및 개소수 등은 사업제안자의 사업비용과 책임으로 제안하여야 합니다.</p>	

구 분	질 의	답 변	비 고
41	<p>p.13</p> <p>제4조 사업의 범위 (2) 사업구간 ⑤ 사업제안자는 수도권제1순환도로 사패산터널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제안 노선이 긴급수송로 또는 우회도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p> <p>· 본 사업노선이 ㉠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의 사패산터널 전후로 접속하도록 2개 이상의 분기점을 설치하여 분기점간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상 사패산터널 전후 한 곳 또는 그 이상의 지점에서 접속하여 다른 도로로 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질의합니다. · 또한 운영방식이 ① 비상 상황에서 긴급자동차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지 ② 이용자에게 통행요금을 부과하고 비상 상황이 아닌 평상시에도 해당 분기점간 모든 이용자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계획(사패산터널의 유료 우회도로 역할)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질의합니다.</p>	<p>○ 제3자 제안공고 제2장 제4조 사업의 범위 (본 사업구간 도면) 등을 참고하여 사업제안자가 제시합니다.</p> <p>○ 운영방식은 사업제안자가 제시하고, 실시협약으로 정합니다.</p>	
42	<p>p.15 , p.28</p> <p>제5조 성과요구 수준 (4) 도로설계기준 ④ 공사기간 : 착공 후 60개월 이내</p> <p>제10조 행정적인 투자 및 운영조건 6.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설정 (1)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등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총사업비와 통행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과의 협상에 의하여 조정하여 결정함. 다만 사업제안서는 사업제안자 간 비교·평가가 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2조, 제33조의2에 따른 손익공유형 수익형 방식(BTO-a)에 따라 작성하되, 관리운영권설정기간은 40년으로 가정하여 작성함.</p> <p>· 공사기간은 총 60개월 이내로 하되 구간을 나누어 단계별로 건설하고, 먼저 건설된 구간의 수입을 사업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p>	<p>○ 본 사업은 단계별 개통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p>	

구 분	질 의	답 변	비 고
	<p>한지 질의합니다. (예시: 특정 구간은 36개월 공사 후 유료 개통, 나머지 구간은 60개월 공사 후 유료 개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 예시와 같이 단계별 개통을 하는 경우, 공사기간 중 먼저 개통한 구간의 초기 24개월을 공고에서 정한 관리운영권설정기간 40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li> </ul>		
43	<p>p.15 제5조 성과요구 수준</p> <p>(4) 도로설계기준</p> <p>⑥ 구체적인 설계기준은 도로구조규칙, 한국도로공사가 제시하고 있는 기준(도로설계요령, 기타 설계지침 등) 및 기타 관련 설계지침 등을 따르도록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사항 : 본 설계기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무관청이 제시한 기준을 충실하게 반영하여야 함.</li> <li>- 적용법규·시방서 및 기준 : 가장 최근의 관련 법규 그리고 각종 시방서 및 기준에 의거하여 설계를 수행하여야 함.</li> <li>- 본도로의 설계는 국토교통부 또는 심의기관의 가장 최근 표준도 및 설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도로 관련하여 최근 개정된 도로터널 내화 지침(국토교통부, 2021), 지하도로 설계지침(국토교통부, 2023) 등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터널 내화지침과 지하도로 설계지침상 기술된 적용범위를 판단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li> </ul>	

구 분	질 의	답 변	비 고
44 p.17	<p>제5조 성과요구 수준</p> <p>(9) 도로운영체계기준</p> <p>① 도로운영체계는 이용자가 무료로 이용하는 구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영업체계(폐쇄식으로 제안)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제안자는 한국도로공사의 영업체계(요금징수 시스템 등)에 부합하는 계획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함.</p> <p>② 본사업 추진과정에서 스마트톨링 시스템 관련 법령·제도, 기술 등이 구체화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주무관청과 협상을 통하여 요금징수시스템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p> <p>· 현재 한국도로공사의 요금징수와 같이 하이패스 또는 스마트톨링이 아닌 현금 또는 카드로 직접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별도 TCS 부스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p>	<p>○ 제안공고일 기준 한국도로공사의 영업체계에 부합하도록 사업제안자가 제안합니다.</p>	
45 p.23 , p.27	<p>제9조 재무적인 투자 및 운영조건</p> <p>2. 총사업비의 산정 및 변경</p> <p>(2) 총사업비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함.</p> <p>② 실시협약으로 총사업비 증감에 따른 조정사유를 규정함에 있어서는 동일사유에 대해 증가뿐만 아니라 감소의 경우도 함께 규정함.</p> <p>...</p> <p>(3) 사업시행자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비용 및 건설사업관리비 차액 정산 등 정산 경비 정산이 발생할 때마다 주무관청에 정산 경비 조정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주무관청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p>	<p>○ 매장문화재 지표·발굴조사는 사업시행자 부담입니다.</p>	

구 분	질 의	답 변	비 고
	<p>제10조 행정적인 투자 및 운영조건</p> <p>2. 실시계획 수립</p> <p>(3) 사업시행자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발굴조사 (표본조사, 시굴조사, 정밀 발굴조사 등)를 하여야 하며, 문화유적 보존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또한 사업시행자의 노선 및 공법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변경)되는 매장문화재 지표·발굴조사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함.</p> <p>·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비용은, 해당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비용보다 증가하는 경우에도 정산이 가능한 것인지 질의합니다.</p>		
46	<p>p.28</p> <p>제10조 행정적인 투자 및 운영조건</p> <p>4. 공사의 준공 및 확인</p> <p>(3)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확인증의 교부 전이라도 본사업시설에 대하여 차량 통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사업시설의 준공 전 사용인가를 할 수 있음.</p> <p>· 주무관청이 준공 전 사용인가를 하였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통행료 징수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질의합니다.</p>	<p>○ 준공전 사용 인가를 하는 경우, 사용인가에 따라 운영하는 기간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에의 포함 여부(관리운영권 설정기간에 포함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통행료 징수), 운영에 따른 수입 및 비용 기타 필요한 사항의 처리는 실시협약으로 정합니다.</p>	
47	<p>p.33</p> <p>제11조 위험의 분담</p> <p>2. 투자위험의 분담 및 환수</p> <p><math>r_f</math> : 5년 만기 국채수익률 (관리운영권설정일 직전 5영업일의 평균값을 적용하되, 5년마다 재 산정함)</p> <p>· 5년 만기 국채수익률 산정 시 기준 시점과 평균 값 계산 시 소수점 반올림 기준을 질의합니다.</p>	<p>○ 지표금리는 기준시점의 값은 반올림 없이 그대로 사용하되, 최종 평균값을 구하는 단계에서 계산된 값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산정합니다.</p>	
48	<p>p.36</p> <p>제12조 사업의 성실이행보장</p> <p>3. 민원처리</p>	<p>○ 제3자 제안공고 제12조 3.(1)에 따라 사업제안자는 본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제기 가능한 민원</p>	

구 분	질 의	답 변	비 고
	<p>(3) 본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협약당사자가 부담함.</p> <p>① 보상민원 : 본사업의 부지 및 지장물의 매수 또는 보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p> <p>② 시공 및 운영민원 : 소음, 악취, 진동, 분진, 교통장애, 기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본사업의 공사 및 운영으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민원</p> <p>③ 보상민원은 주무관청의 책임하에 처리하고, 시공 및 운영민원은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며 사업시행자는 시공 및 운영민원에 대한 사전 예방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함. 다만, 본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보상민원으로서 주무관청의 보상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민원이 발생하여 본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동 민원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협의하기로 하며, 협의 결과 총사업비의 변경으로 동 민원을 해결하기로 한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동 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총사업비에 추가 반영하기로 함.</p> <p>· 보상민원, 시공 및 운영민원 외 본사업 또는 본사업노선 건설 자체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의 책임주체는 협약당사자 중 누구인지에 대해 질의합니다.</p>	<p>을 예상하여 그 민원 발생 가능성, 예상 민원에 대한 처리계획, 민원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 등을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합니다.</p> <p>○ 제3자 제안공고 제12조 3.(2)에 따라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또는 우선협상대상자는 성실히 협의하도록 하고, 민원의 발생 원인, 민원처리 책임주체 등은 실시협약으로 정합니다.</p>	
49	<p>p.42 제4장 협상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16조 협상 기간 및 준수 사항 등</p> <p>(5) 실시협약 체결시 총사업비 감증을 위해 공사비 적정성 검토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등을 전문기관(조달청, 한국도로공사, 연구기관 등)에 의뢰함.</p> <p>· 공사비 단가의 적정성 검토 관련 비용을 총사업비 중 부대비 항목에 별도로 반영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p>	<p>○ 공사비 단가의 적정성 검토 관련 비용은 부대비 항목에 반영하지 않습니다.</p>	